

예산총칙

2026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26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510,933,202	15,327,996
일반회계	501,215,518	15,036,466
특별회계	9,717,684	291,531
기타특별회계	9,717,684	291,531
상수도사업특별회계	8,669,233	260,077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594,852	17,846
자활기금특별회계	453,599	13,608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2026년도 채무부담행위는 "해당없음"으로 한다.

(채무부담행위: 예산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지만 연도내에 사업을 계약하고 대금은 익년도 이후에 지불)

제 4 조 계속비 이월사업은 "해당없음"

제 5 조 명시 이월사업은 "명시 사업조서(명세서)"와 같고 "별첨" 부속서류에 첨부한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중 예비비는 40억원으로 한다.(일반 20억원, 재해재난 20억원)

제 7 조 2026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80억원으로 한다.

제 8 조 다음 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.

- (1)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
- (2) 재무활동 경비(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, 국도비반환금, 과오납금)
- (3) 공공요금 및 제세, 배상금
- (4) 당직수당(일·숙직비)
- (5) 재해대책 및 복구비

제 9 조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국·도비 등 이전재원 보조사업 중 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을 교부한 경우 간주예산으로 처리하고 필요 시 명시이월 사업에 포함한다.